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송재봉 · 이재관
양부남 · 강준현 · 박홍배
서미화 · 전진숙 · 김문수
박정현 · 이주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서울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·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·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·산업·재정 여건과 지역발전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,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)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8조제2항제1호 중 “인구 100만 이상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

나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

- ④ 국가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8조(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) ① (생 략)	제198조(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· 통합특별시 ·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 · 군 · 구의 행정,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· 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</u> (이하 “특례시”라 한다)	1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가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<u>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</u>
<u><신 설></u>	나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<u>인구 50만 이상 대도시</u>

2. (생략)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국가는 제2항제1호나목에</u> <u>따른 대도시가 지방소멸 위기</u> <u>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</u> <u>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</u> <u>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</u> <u>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</u> <u>한다.</u>
---	---